

#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99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12월 21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전부개정 「지방자치법」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(안 제1조 등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”로 한다.

제7조제7항 중 “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8조”를 “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0조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법 제41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1항”을 “법 제49조제4항 및 영 제46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41조제4항”을 “법 제49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5항”을 “법 제49조제5항 및

영 제46조제6항부터 제7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감사·조사의 범위) ①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감사·조사의 범위) ① 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----- ----- --.</p>
<p>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 ① ~ ⑥ (생략) 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8조를 따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</p>	<p>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0조----- ----- -----.</p>
<p>제8조(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) ① 본회의, 감사 또는 조사</p>	<p>제8조(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) ① -----</p>

